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1149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64016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114960 판결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현영, 이정기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7. 1.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8.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8.

8. 23. 접수 제45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28584호 양수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6.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소외 회사에게 53,188,352원 및 그 중 30,283,952원에 대하여 200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2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8. 5. 3.경 B에게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B의 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9. 1. 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 피고, B, E, F은 2018. 8.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8. 8. 23. 접수 제4513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1)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020. 9. 24. 현재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122,140,190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정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H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B는 1996년경부터 I카드 등에 여러 금융채무를 부담하다가 이를 최종 양수한 원고에게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실질적 가장으로서 동생인 B을 양육보호해왔기 때문에 B이 상속을 포기하고 형인 A에게 이를 양보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량한 사회 정서상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선량한 풍속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주장을 사해행위에 있어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거나 상속의 포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1)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처이자 피고, B, E, F의 어머니인 G가 생존해 있다가 2011년경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 이전

G가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G의 상속지분이 피고, B, E, F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이므로, 형제들인 피고, B, E, F의 상속지분은 결국 각 1/4로 판단된다.